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614

발의연월일: 2023. 3. 14.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이종성

박대수 · 최춘식 · 지성호

김학용 • 이주화 • 정우택

이종배 • 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으며,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또한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리고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경쟁 우위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

이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울타리 내에 두기 위한 전략으로 2022년에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 이어 제정하였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음.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

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유럽도 「유럽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관련 산 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반도체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 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 로,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 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 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2023년 12월</u>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
	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
	<u>한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가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② ~ ⑤ (생 략)

•
<u>.</u>
1) (현행과 같음)
2)
2030년 12월 31일
<u>100분의 20(중</u>
<u> 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u>
기업은 100분의 30)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